

서울서부지방법원 2022. 4. 6 선고 2022가단572 판결 [사해행위취소 등]

전 문

원 고 주식회사 A

피 고 B

변 론 종 결 무변론

판 결 선 고 2022. 4. 6.

주 문

1.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1/3 지분에 관하여,
가. 피고와 C 사이에 2020. 3. 11.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한다.
나. 피고는 C에게 진정등기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

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
2. 근거

무변론 판결 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, 제257조)

판사 김진희

별지